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0호, 2023.10.31.)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제2023-213호, 2023.12.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보건복지위원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암센터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방병원협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

주무관	유미정	보건사무관	이정우	의료보장혁 신과장	전결 2023. 11. 21. 강준
-----	-----	-------	-----	--------------	------------------------

협조자

시행 의료보장혁신과-1895 (2023. 11. 21.) 접수 의료자원과-11097 (2023. 11. 21.)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685 /전송 044-202-3983 / kkbymj12@korea.kr / 대국민 공개